

연구용역보고서

2021. 10. 07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21. 09. 30

부산기업법률원

원장/법학박사 하 헌 주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제1절 연구의 목적

- 2019년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용역 의뢰한 연구보고서 “(주)부산 남구미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과 실행 시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행할 법적 근거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 용역이 시작됨.
- 위 용역보고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start-up·벤처·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거시적 경제 지표를 활용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립의 타당성 전반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제도화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안으로 기준이 되는 법규범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의회에서 제정 가능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더하여 위의 용역 보고서가 거시 경제학적 연구방법으로 우리나라의 start-up·벤처·중소기업을 망라하는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연구 검토 작성 되어, 실제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의 start-up·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서의 곤란 등의 실질적인 경영애로사항을 파악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대상기업들을 방문하여 대표이사나 대표의 일선 실무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조례 제

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방문 대면 조사를 진행하여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분석 후에 활용하기로 함.

- 방문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거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추가로 설문지를 만들어 진행하는 방법을 가미함 (설문지 제작 작성 후 방문한 기업에 한정).
-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영업소를 둔 start-up·벤처·중소기업의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i)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정 부분 자금을 출연한 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목적한 기금을 조성하고, (ii) 이를 토대로 대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며, (iii)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기본이 되는 규범으로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제정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장소-부산광역시 남구.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2021년 6월부터 9월까지(4개월).

## ■ 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에 영업소를 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 내용적 범위

- “(주)부산남구미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함.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스타트업 현황과 실태 분석, 2021. 5를 참고 자료로 활용함.
- 조례 제정에서 상위법규와의 법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 (1) 상법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3) 벤처투자촉진법
- (4) 중소기업기본법
-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6) 지방출자출연법
- (7) 소상공인기본법

등의 법률과 시행령의 저촉 여부에 관한 법리를 비교 분석 검토하여 법전편제 방식에 따른 조문별 조례(안)을 확정함.

- 대상기업의 CEO들과 대면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표를 추가로 만들어 이후의 대면 조사에서

는 병행하여 활용함.

##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 용역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영업소를 둔 start-up·벤처·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금을 조성하고, 민간에서도 참여하여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법리를 비교 분석 검토하여 법전 편제 방식으로 조문을 나열함.
- 조례안의 제정에 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면 면담과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활용함.

## 제2장 대면 면담과 설문지의 내용 분석

### 제1절 개요

#### ■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영업소를 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나 대표 및 이사를 면담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함.

#### ■ 면담 소요 시간

1시간~1시간 30분(예상)

#### ■ 대상 업체 수

30개 내외

■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하는 기업들 중에서 (i) 문현동 국제금융단지 내에 소재하는 핀테크 기업과 (ii)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의 드래곤 벨리 입주 기업(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중심)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iii) 그 외의 지역(용당동, 대연동, 감만동 등)에서는 10여년 정도의 경영을 지속한 기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위 순서로 기업을 방문하여 대표이사 또는 대표를 만나 대면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함.

■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거자료로 축적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병행하여 활용함.

- 공통 설문 내용 이외에 그 기업의 현황의 특수성이나 특이점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반영함.

## 제2절 대면 조사와 설문지의 내용 분석

### 설문 Q1. 지분 구성

- (1) 주주: 1인-5개(16.6%)                      (2) 2~4인-25개(83.3%)
- (3) 5인 이상-없음

\* 개인 기업은 1인 주주에 포함.

- 도출) 1. 개인 또는 1~4인 정도의 젊은 주주들로 구성되어 자본금의 규모가 영세함.  
 2. 조사 대상 기업의 회계장부상의 자본금의 규모는 100만 원 ~5억 원 사이([www.cretop.com/](http://www.cretop.com/) 참조).

### 설문 Q2. 필요자금의 조달 방법

- (1) VC조달: 3개(10%), (2) 중진공·기보·신보의 대출: 29개(96.6%)
- (3) 시중은행의 대출: 0개(0%)              (4) (1)·(2)중복 조달: 3개(10%)
- (5) (2)·(3)중복 조달: 2개(6.6%) (6) (1)(2)(3)중복 조달: 1개(3.3%)
- (7) 정부의 정책자금: 1개(3.3%)        (8) 외부 자금 없음: 1개(3.3%)

\* 외부 자금 조달이 없는 기업에서도 2021년 7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자금을 신청 중에 있음.

- 도출) 1. 조사 대상 모든 기업에서 필요자금의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조달 금액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임.

2.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start-up·벤처기업의 주된 자금조달 통로임을 재차 확인.
3.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한 자금조달 금액은 1~2억이 대부분이고 특허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30억을 지원(1개 기업) 받음.
4. start-up·벤처기업에서 법인명의의 시중은행의 대출을 이용한 자금조달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5. 시중은행에서 CEO의 개인 신용이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은 본래 의미의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치에서 제외.
6.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복 조달을 노력 중이나 수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6개)의 기업에서만 가능함.
7. 이상의 분포를 볼 때, start-up·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과업을 실행에 옮길 경우에는 기금의 조성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수의 대상기업에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효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설문 Q3. 자금상황

- |                   |                 |
|-------------------|-----------------|
| (1) 충분-0개(0%)     | (2) 보통-1개(3.3%) |
| (3) 부족-29개(96.6%) |                 |

- 도출) 1. 면접 조사 대상 기업 모두에서 자금 부족을 호소함(다만 표현의 정도로 파악하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임)
2. Start-up·벤처기업은 발아 단계이거나 성장의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매출액이 없거나 적고, 인건비와 임대료 및 4대보험료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항상 운영자금이 부족



한 상태를 재차 확인함.

#### 설문 Q4. 급박한 자금수요 시 조달방안

없음. 다만 시중은행을 통한 CEO의 개인 대출의 방법으로 충당함.

\* 개인 대출을 이용하여 필요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어 회계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 위험을 가중할 수 있음.

- 도출) 1. 조사 대상 기업의 모든 CEO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임.  
2.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선순환 구조의 생태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인 해결 방법의 마련을 촉구함.

#### 설문 Q5. 창업투자사(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의견

- (1) 찬성: 30개(100%)                      (2) 반대: 0개(0%)

도출) 면접 대상기업 모두 찬성하고 강력하게 지지함.

#### 설문 Q5-1. 출자와 대출 중 선호도

- (1) 출자: 21개(70%)                      (2) 대출: 7개(23%)

- 도출) 1. 70%의 기업에서 출자를 선호함. 다만 가능한 한 경영권에 대한 간섭은 배제해 줄 것을 요망.  
2. 해결책으로는 의결권을 배제한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함.  
3. 경영권을 중시하는 CEO의 경우에는 경영권에 간섭하는 출자

라면 오히려 대출을 하겠다는 입장임.

4. 대출을 선호하는 기업에서는 경영권에 관한 애착이 강하여 외부의 이질적 자본의 유입자체를 거부함.

#### 설문 Q5-2. 출자 후 배당까지의 예상 소요 기간

- (1) 3~5년: 19개(43.3%)      (2) 5년 이상: 7개(23%)  
(3) 예상 못함: 4개(13%)

- 도출) 1. 해당 기업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이나 편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2. 통념적으로 3~5년 정도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듯함.
  3. 다만 중소기업청 등에서 운영하는 크레탑([www.cretop.com/](http://www.cretop.com/))에 탑재된 재무제표 등을 고려한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소수의 기업에서는 2020년말 현재 기준 회계장부에서 영업이익이 있음.

#### 설문 Q5-4. 일반 VC와 지방자치단체 VC 선호도

- (1) 지방자치단체VC: 30개(100%)      (2) 일반VC: 0개(0%)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 없음을 전제로 함.

- 도출) 1. 자금조달의 통로가 늘어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함.
2. 외부 자금이 유입됨에도 경영권 간섭이 없다는 점을 선호함.

#### 설문 Q5-5. 지방자치단체 창업투자사(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견해

- (1) 찬성: 28개(93.3%)      (2) 반대: 2개(6.6%) 이유-지방자치단체  
의 과도한 영역 확대

도출) 찬성

설문 Q6. 남구 관내 업체만 자금 지원

- (1) 찬성: 29개(97%)      (2) 반대: 1개(3%) 이유-차별이라 생각됨

도출) 대상 기업이 한정적이므로 경쟁력의 우위에서 자금조달의 가능  
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설문 Q7. 기업 경영의 위험 관리 방안

1. 자금 부문 (1) 있음: 0개(0%)      (2) 없음: 30개(100%)

2. 노무 부문 (1) 있음: 2개(7%)      (2) 없음: 28개(93%)

도출) 1. 기업경영에서 경영 risk hedge를 위한 방안으로 자금 여력이  
극히 부족한 출발 단계의 신생기업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가 아님.

2. start-up·벤처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외부의 자극제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적극  
고려할 영역으로 판단됨.

설문 Q7-1 노무·산재 risk hedge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실행 조건

- (1) 찬성: 23개(76.6%) (2) 반대: 0개(0%)  
(3) 비용의 일부지원 조건: 7개(23.3%)

- 도출) 1. 산재보험의 가입으로 산재와 노무로 인한 모든 사고가 해결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손해배상 등의 민사배 상금의 지급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 설문 Q8 설립하는 창업투자사(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기대

다양한 방법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요망하고, 초기 신생기업의 생태 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함.

#### 설문 Q9. 기타

- 기업경영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까다롭고 복잡한 경영애로 범 율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전 예방적 지원과 분쟁 발생 후의 해결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지원을 요청함.
  
- 특히 기업경영 중에 필요한 법률 양식 구비, 예컨대 정관 개정, 자 본증가의 절차에 필요한 법적 요건 구비,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 록 작성 방법, 서면결의서 등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각종 법률 서 식을 구비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기초자 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함.

### 제3절 종 합

- 면담 진행 중 대부분의 start-up·벤처·중소기업에서 정관의 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기업경영에서 갖추어야 하는 기초 법률구비 서식조차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기업경영에서의 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법적 구비 사항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입는 제재금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민사상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발생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임.
- 경영 활동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사나 행정사 등을 통하여 서식 등을 법률 요건에 맞추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과다하다는 애로를 토로함.
- start-up·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날로 강화되는 산재나 각종 노무 문제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토로함.
- 이러한 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함.
- 첨언- 대상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고충이 다양하고 안타깝기도 하여 부산기업법률원의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몇 개 업체의 법률문제를 지원하여 해결하였음-정관개정, 주주총회 서면결의서 작성, 근로계약서 양식 수정, 물품거래 계약서 보완, 취업규칙 검토, 직장 내 따돌림 등의 고충사항을 지원하여 해결하였음.

## 제3장 조례안

### 제1절 도입-입법의 방향

#### 1.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이유(조례(안) 제1조, 제6조, 제11조)

- 특수목적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만들어 지는 법인으로써, 그 종류는 보통 상법상의 5가지 회사종류 중에서 특수목적법인의 성질과 기능 및 효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본 연구용역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스스로가 목적의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흡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구분하고,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혹시 있을 수 있는 외부의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는 독립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여야 함.
- 특수목적법인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를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정하여 법률관계를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2. 대상의 한정(조례(안) 제2조)

- 본 연구용역에서는 자금조달 대상기업의 영역을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관할 등의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남구의 행정구역 내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그 성과를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보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성과물로 할 수 있음.

■ 기금의 조성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를 용이하게 확정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운영상의 간편함이 있음.

### 3. 자금 조달의 실행 방법(조례(안) 제3조)

■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예정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자기자금을 조달하는 자기자본 조달(출자)의 방법과 타인자금을 조달하는 타인자본 조달(대출)의 방법 2가지가 있음.

■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출자의 경우

- 자기자본을 조달하여 이자부담 등의 추가적인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 없음.
-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에서 배당을 실행하면 되므로 기업의 자금 운용의 폭이 넓고 편리함.
- 출자에 따라 지분을 형성하여 지분의 범위 내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용역의 관점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활동의 제약을 차단하고, 경영 판단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대출의 경우

- 경영권에 대한 간섭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이자 지출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기간 만료 시에는 대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함.
  - 본 연구의 대면조사와 설문조사에서는 대출에 대한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호응도가 적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2019년 남구청에서 발주한 “(주)부산남구미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도 출자를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여 대출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음.

#### 4. 지분의 구성(조례(안) 제4조, 제5조)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일정 금액을 출연한 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음.
- 기금 조성에 참가한 사람들로 조합을 결성하여 조직하고, 출자한 금액으로 지분을 구성하여 지분에 따른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함.
- 이러한 기금 조성의 형태를 고려해 보더라도 유한책임회사가 적절한 형태로 판단됨.

#### 5. 리스크 헷지 방안-단체보험과 경영자 보험 제도의 접목(조례(안) 제10조)

- 조달된 자금이 start-up·벤처기업·중소기업의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무와 산재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



심사단계에서 근로자의 산재사고를 담보할 단체보험 가입을 전제로 설정함.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도 그 기관의 보증서를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우연한 산재사고의 발생으로 민사합의 배상금으로 소진하여 본래의 자금용도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자금의 고갈로 법인을 폐쇄한 경우가 발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start-up·벤처·중소기업은 CEO가 회사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특정 1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CEO의 유고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기업을 소멸시킬 우려가 매우 큼. 이를 헷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인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할 경우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영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특수목적법인의 회사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한 이유(조례(안) 제11조 이하)

### (1)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2019년 용역보고서의 내용<sup>1)</sup>

제5장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제2절 출자법인 운영계획의

#### 1. 운영조직 및 인력체계 구상에서는

- 가. 법인 설립 계획으로 특수목적법인의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하고,
- 나. 운영조직으로 대표이사과 감사를 두고, 비상근 형태의 이사

---

1) 부산광역시 남구청, ㈜부산남구미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2019년, 99면 이하 참조

와 감사를 두며,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경영관리팀과 투자 관리팀으로 구성함(<그림 V-7> (주)부산남구미래 조직 구성 (안)).

## 2. 비용 산정에서는

- 가. 인건비로 대표이사 1인-1억원, 수석심사급 1인-8천만 원, 펀드매니저 2인-총1억 원, 경영관리 1인-4천만 원을 책정하여 연간 3억 2천만 원을 예정하고,
- 나. 운영비 항목으로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부담금, 임대료 등의 운영비로 1억 1천만 원을 가정하여 연간 고정 지출 비용으로 4억 3천만 원을 산출하고 있음.<sup>2)</sup>

### (2) 위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연구용역에서 판단하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로 주식회사제도는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비대하여 기관과 조직을 형성하는데 많은 인원과 과도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됨.
- 조성되는 기금이 50억에서 최대 100억 원 내외임을 감안할 때, 단순 수치로 계산하더라도 10년 운영으로 조성된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됨.
- 설문조사표 Q5-2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짧게 잡아 5년으로 산정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필요비용으로만 기금의 약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소진하여야 함.

2) 부산광역시 남구청, 앞의 용역보고서, 99면~103면.

■ start-up·벤처기업의 성공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게 잡더라도 10% 미만임을 고려해 볼 때, 특수목적법인의 회사형태를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것은 운용과 비용 측면에서 타당성을 매우 결여한 판단으로 보임.

■ 대상 기업의 수와 조성되는 기금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대표이사1인·수석심사급 1인·펀드매니저 2인·경영관리 1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방만한 인적 구성이라고 보여 짐.

### (3) 대안

■ 조성되는 기금의 규모와 대상 기업의 수를 감안해 볼 때, 조직을 간편하게 구성하여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매우 큼.

■ 출자의 심사와 실행단계에서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여 독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소규모 회사의 설립에 적합한 기업형태가 유리하고, 조합을 결성하여 기금의 조성하고, 출자한 지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의의 회사형태인 유한책임회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4) 유한책임회사의 장점

■ 경제체제가 지식기반형 산업구조로 프레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사적 자치를 존중하고, 인적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기업 형태이어야 함.

- 사원(출자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출자 등의 실행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에 탁월한 회사 형태이고,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임.
-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요소(넓은 사적 자치)를 갖고, 외부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요소(사원의 유한책임)를 구비하여 소규모 폐쇄 회사의 운영에 매우 적합한 구조임.
- 소수의 인원으로 기업을 조직하여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수 있고, 조직의 슬림화가 가능하여 운영비 등의 절감에 탁월한 회사 형태임.

## 제2절 조문별 조례안 및 해설

- 조문별 조례(안)에 관한 해설은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해당 조문 아래에 ‘해설’란에서 구분하여 항목별로 설명함.
- 제11조 이하는 이미 상법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법조문과 법리 등을 검토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에서는 별도의 해설을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설명을 갈음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start-up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함.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뜻함.
3.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금을 확보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i) 영업활동으로 취득한 이익을 다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ii) 기업의 일정 재산(부동산과 동산 등)에 민법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iii) 무담보 신용을 바탕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음. 그리고 (iv) 상법에서는 기업 자신의 명의로 자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타인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음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에 영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 해설 1. 영업소란 기업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업의 존재와 활동을 장소적으로 통일하는 곳을 뜻함.
2.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장소를 의미함.
3. 영업소를 둔 개인이란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개인상인)을 의미함.
4. 영업소를 둔 법인이란 상행위를 영위하는 법인(법인상인)을 의미함.

**제3조(방법) 대상 기업에 출자의 방법으로 실행한다.**

- 해설 1.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방법과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음.

2. 기왕의 용역보고서인 “(주)부산남구미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도 일관되게 출자를 전제로 기술하고 있음.

## **제2장 지분 구성과 운영 주체**

**제4조 (기금) 부산광역시 남구 기초자치단체에서 〇〇%이상 출자한 후,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자금을 조성한다.**

- 해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금액의 총액
2. 투자조합-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출연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출자액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짐.

**제5조 (대상) 투자조합의 참가는 개인과 법인 및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 해설 1. 기금 조성에 참가를 원하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음.
2.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 및 금융투자전문가로서의 은행이나 투자기관 등 제한이 없음.

**제6조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금을 운용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

- 해설 1. 특수목적법인이란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법인을 뜻함.
2. 첨단 경제사회의 발달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특수목적법인이 출현하고 있음.
  3. 특수목적법인은 일반적으로 상법에서 규정한 5가지 종류의 회

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에서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제7조(설립 방법)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설립 비용 등은 투자조합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해설 1. 특수목적법인이 독립된 개체로서 권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지출되는 설립비용의 일체가 포함됨.

**제8조(특수목적법인의 역할) 특수목적법인은 자금을 운영하고,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해설 1. 특수목적법인이 독립된 개체로서 설립목적에 맞는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임.  
2. 출자한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영 전반에 관한 경영학적·경영법률학적 컨설팅(경영권에 대한 간섭은 제외함)을 제공함.

**제9조(출자금 회수 방법) 대상 기업의 IPO, 지분의 장외매각, 출자금 상환 등의 방법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수령한다.**

해설 1.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의 범위에서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배당 결의를 통한 배당금 수령  
2. 출자금 상환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3. 대상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의 장외 매각  
4. 그 외에 당사자 사이에서 출자금 회수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의 발생 등.

**제10조(기타) 조성된 자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출자 실행된 자금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제도를 가미한다.**

- 해설 1. 대상 기업은 대부분이 창업 초기의 발아 단계이거나 초기 성장 단계에 위치하므로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자금조달 기법 또한 매우 제한적 상태임.
3. 초기 성장단계의 기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법의 일환으로 기업보험제도 접목
- (1) 산재사고와 노무사고 등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나 노무사고의 발생 시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민사배상금을 헷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보험의 가입을 요건으로 함.
- (2) 대상 기업은 CEO가 기업 자체라고 할 만큼 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CEO의 유고는 곧 기업의 존립과 관련되므로, 이를 헷지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제3장 특수목적법인**

#### **제1절 설립**

**제11조(설립) 특수목적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제12조(정관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절 내부관계

제1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분의 양도) ①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①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②업무집행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 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될 수 없다.

③업무집행자가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법 제198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업무집행) ①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정관으로 둘 이상의 공동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원의 감시권) ①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영업시간 내에서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무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

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정관 변경) 정관은 총사원의 (동이나 과반 또는 2/3이상의 동의 중 선택)로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절 외부관계

제20조(대표권) ① 업무집행자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4절 사원의 가입과 탈퇴

제22조(가입) ① 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출자에 관한 납입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납입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제23조(퇴사) ①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퇴사할 수 있고, 6월 전에 이를 회사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24조(퇴사의 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 후견 개시
5. 파산
6. 제명

제25조(제명) ①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그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사원이 업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원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4.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5.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 제5절 회계 등

제26조(회계 원칙)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27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재무제표의 비치·공시) ①업무집행자는 전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사원과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의 가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제30조(잉여금의 분배)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을 한도로 잉여금을 분배한다.

② 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제6절 해 산

제31조(해산 원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2조(해산등기) 합병과 파산 이외의 사유로 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내에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절 기 타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제287조의2에서 제287조의 4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34조 (시행일)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제4장 결론

- 이상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의 근거와 목적을 비롯하여 구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나열하였음.
- 특수목적법인의 세부적인 인적 구성과 조직도 및 운영방향은 조례(안)을 바탕으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통하여 구체화하여야 함.
- 특수목적법인이 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목적인 출자 실행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정하여 내부규정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